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 위원회 운영의 바람

이 창 부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 위원장)

一. 소관분야(所管分野)의 현황(現況)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된 광물(鑛物)·식물(植物)·동물(動物)을 비롯하여 명승지(名勝地) 및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으로 지정된 지역등(地域等)이 본분과(本分科)의 소관(所管)이며 현재(現在)까지 지정(指定)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보면 대략(大略) 다음과 같다.

1. 광물분야(鑛物分野)

암석(巖石) 3점 생물화석(生物化石) 4점 및 동굴(洞窟) 12점등 모두 19점이 지정되어 있다. 암석(巖石)은 구상화강암(球狀花崗巖) 같이 희귀(稀貴)한 종류가 들어 있으나 전석상태(轉石狀態)로 발견된 이래 그 근원지(根源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화석(化石)은 왜관(倭館)에 있는 화석(化石) 사리 포함지(包含地)을 비롯하여 4점이 있으며 여기에서 밝혀진 화석종(化石種)은 중생대(中生代) 상부(上部)에서 쥐라기(期)를 거쳐 백악기(白堊期)까지 자라던 식물이며 양치류(羊齒類)에서 나자식물(裸子植物)까지 포함된 낙동식물화석군(洛東植物化石群)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갖고있는 식물계통학(植物系統學)의 중요한 자원(資源)이다. 이미 사라져 버린 식물의 화석으로 없어지면 영원(永遠)히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들이다. 서귀포(西歸浦)의 패류화석(貝類化石)을 비롯하여 지사시대(地史時代)의 빗방울자국등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

12점의 동굴이 지정되어 있는데 울진의 성류굴(聖留窟)이나 제주도의 만장굴(萬丈窟)같이 대부분(大部分)이 공개(公開)되어 있어 앞으로는 이의 항구적(恒久的)인 보존문제(保存問題)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2. 동물분야(動物分野)

포유류(哺乳類) 8점, 조류(鳥類) 42점, 어류(魚類) 7점, 곤충(昆蟲) 2점등 59점이 지정되어 있다.

포유류는 산양(山羊)·사향노루등 멸종위기(滅種危機)에 처해 있는 종자체(種自體)를 비롯하여 쇠고래의 회유수면등(回遊水面等) 서식지(棲息地)를 포함하고 있다. 조류(鳥類)는 종자

체는 42종이 지정되어 있으나 어떤 것은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및 흰꼬리수리등을 수리류로 묶어서 1점으로 취급한 것들이 있어 종자체로는 20점이 지정 되어있다. 광릉(光陵)에는 크낙새가 살고 있다. 따라서 크낙새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다. 2점의 서식지와 더불어 13점의 번식지 그리고 각종 철새가 쉬어가는 곳 7점을 철새 도래지로 지정하는 등 모두 42점이 지정되어 있다.

어류(魚類)는 한강(漢江)의 황쏘가리를 비롯하여 종자체가 지정된 것 4점과 제주도 서귀포 천지연의 무태장어 서식지를 포함한 3점의 서식지가 지정되어 있다. 곤충(昆蟲)은 장소하늘소같이 종을 지정한 것과 반딧불을 보호하기 위한 그 먹이인 다슬기 서식지를 지정한 것이 있다.

3. 식물분야(植物分野)

노거수(老巨樹) 116점, 자생지(自生地) 24점, 자생북한지(自生北限地) 8점, 수림(樹林) 20점, 방풍림(防風林) 및 호안림(護岸林) 4점등 172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식물중에서 노거수(老巨樹)의 지정 점수가 가장 많으며 수령(樹齡)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정 되었으나 크기에 의한 판정(判定)이었음으로 지정된 것보다 높은 수령의 것이 빠진 것도 있을 것으로 본다. 노거수(老巨樹)로 지정된 나무들은 그 종중에서 가장 큰나무이지만 이팝나무에서는 조사미비로 예외(例外)가 있었다. 노거수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선조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결과 자연수명(自然壽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생지(自生地)는 활용(活用)에만 치우친 나머지 자칫하면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경제수종이나 희귀수종의 생육지를 지정한 것이며 미선나무를 비롯한 24점이 있다. 식물이 자라는데는 한계가 있다. 북쪽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북한지(北限地)라고 하며 8점이 지정되어 있고 남한지(南限地)는 지정된 것이 없다.

풍해(風害)와 수해(水害)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방풍림(防風林)과 호안림(護岸林)이 오늘까지 남아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된 것이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방풍림(防風林)이나 호안림(護岸林)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풍수설(風水說)에 의한 지형적인 결함(缺陷)을 보완(補完)하기 위하여 설치(設置)한 것이 많다. 함양상림(咸陽上林)은 호안림(護岸林)으로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물건방조어부림(勿巾防潮魚付林)과 무안청천리(務安淸川里)의 줄나무는 방풍효과(防風效果)를 노린 것이었다.

수림(樹林)은 상록수림(常綠樹林)이 13점, 낙엽수림 7점등 20점이 지정되어 있다. 수림의 보호는 주도(珠島)와 같이 중앙(中央)에 서낭당이 있는 것은 잘 보존되고 있으나 단순한 전설이 있는 곳은 과학교육(科學教育)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휴양지로 변하거나 산업시설의 일부로 활용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 강원도 원성군에 있는 성황림이나 진도(珍島)에 있는 상록수 등이 이에 속한다.

4. 소택지(沼澤地)

날이 갈수록 늪지대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던 식물은 발붙일 곳이 없어 사라져 간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이 함안군(咸安郡) 법수면(法水面)의 늪지대이다.

5.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

설악산·한라산을 비롯한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물려받은 유산중에서 이것만이라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곳이다.

6. 명승지(名勝地)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며 바위·물·식물등이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강원도 명주군의 소금강을 비롯하여 7개소가 있다

二. 위원회(委員會)의 업적(業績)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에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의제를 다루어 왔던 문화재현황(文化財現況)에서 소개(紹介)한 257점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7점의 명승지(名勝地)가 본위원회(本委員會)의 자문성과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고도의 산업발전과 관광사업의 확장으로 근래에는 새로운 지정이나 항속적인 발전책에 대한 의제보다 문화재의 일부 보수와 지정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요구하는 건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의 여파로서 밀려오는 물결을 제지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三. 위원회 운영의 바람

대부분(大部分)의 위원(委員)이 생물학(生物學)이나 지질학(地質學)의 대가(大家)들이다. 따라서 제안(提案)된 의제(議題)의 처리에 있어서는 해당분야(該當分野)의 전문지식(專門知識)을 충분히 활용(活用)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유지(現狀維持)에는 도움이 되었겠으나 날로 발전하는 현실(現實)속에 놓여있는 문화재(文化財)의 효율적(效率的)인 보존(保存)과 비장문화재(秘藏文化財)의 발굴이란 견지(見地)에서 볼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補完事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1. 항속적보존대책 수립(恒續的保存對策 樹立)

국토개발(國土開發)이나 공원개발계획등(公園開發計劃等)을 짚대 미리 부처간(部處間)의 협의를 거쳐 성안(成案)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멸종위기(滅種危機) 생물(生物)에 대한 우려보다 특산종(特産種)의 파악이 시급(時急)하며 이미 지정(指定)된 것 중에서도 생물의 경우에는 생(生)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건(與件)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동물(動物)의 경우 서식지(棲息地)·번식지(繁殖地) 및 도래지등(渡來地等)에서는 설만한 환경유지(環境維持)와 먹을 수 있는 자원(資源)을 확보하는 것 등이 절대로 필요하다.

2. 적극적발굴(積極的發掘)을 위한 대책(對策)

생물(生物)은 물론 광물(鑛物)의 종류는 넓은 범위에 널리 있으므로 끈질긴 정보수집(情報蒐集)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노거수경선제도(老巨樹競選制度)(Tree Champion System)가 있어 노거수발굴(老巨樹發掘)에 전국민(全國民)이 참여(參與)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문화재(文化財)의 발굴과 보존(保存)에 있어서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때가 왔다고 본다.

3. 유훈(遺訓)의 계몽시책수립(啓蒙施策樹立)

선시자(先視者)들은 비참한 수해(水害)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함양상림(咸陽上林)을 조성하였고 물건방조어부림(勿巾防潮魚付林)이나 무안청천리(務安淸川里)의 줄 나무를 설치하여 줌으로서 후손(後孫)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의 일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한 때의 놀이터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어패(魚貝), 기타 생활용품(生活用品)의 보관창고(保管倉庫)같이 활용함으로서 선조(先祖)들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선조(先祖)들의 유훈(遺訓)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유물(遺物)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4. 특산종(特産種)의 보존책(保存策) 수립(樹立)

인류(人類)는 식물(植物)에 의존(依存)하여 생(生)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자연 보호운동은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남기 위한 운동이다. 특히 특산종의 보호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전인류에게서 맡은 바 의무중(義務中)의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산종이 우리 영역(領域)에서 사라질 때 이 식물은 지구에서 영영(永永)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상 4개의 과제(課題)는 문화재(文化財)의 진가(眞價)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길을 터서 항구적(恒久的) 보존(保存)에 필요한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직 위원회에서 다루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노거수보호(老巨樹保護)의 경우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효력(效力) 보다도 아직은 민간신앙(民間信仰)에 의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력한 효력(效力)을 발휘하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실천되길 바라고 있으나 그렇게 쉽게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며 당면과제로는 새마을 운동에서 의당 다뤄야 될 문제의 하나라고 본다.